

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461

현 행	개 정 안
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지역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, 해당 반기 익월 20일까지 중앙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중앙센터는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지역센터를 비롯한 각 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, 해당 반기 익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~④(삭제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신용정보조회 등) 센터장은 현장실태조사 실시 전후에 법인 또는 기업대표자에 대한 <u>신용정보조회</u>를 실시 또는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 사항을 각 <u>수출지원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 (신설)</p>	<p>---.</p> <p>제7조(신용정보조회 등) ----- ----- -----<u>신용정보조회</u>를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수출지원기관</u>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(증빙자료가 확인된 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)이 매년 30% 이상인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다.</p>
<p>제13조(지정기간 및 횟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회로 한다. 다만,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당해년도의 수출 증가율(증빙자료가 확인된 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)이 매년 30% 이상인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지정기간 및 횟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, 다만,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는 3회까지 지정할 수 있다.</p>
<p>제15조(지정의 취소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<u>중소기업청</u>, <u>중앙센터</u> 및 <u>지역수출지원기관</u>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지정의 취소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중소기업청</u> 및 <u>지역수출지원기관</u>의 장에게 -----.</p>
제18조(사후관리)	제18조(사후관리)

「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」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 (신설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우선 선정”이란 평가 없이 선정함을 의미한다.</p>
<p>제3조(지정대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생략) ② (생략)</p> <p>1. <u>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내국 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</u></p> <p>2.~5. (생략)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지정대상 등) ① ----- <u>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-----</u> 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신청전년도와 -----</u> ----- -----</p> <p>2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신청절차 등) 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<u>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센터장에게 제출</u>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</u> (별지 제1호서식) 1부</p> <p>2. <u>수출이행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 1부</u></p> <p>3. <u>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(별지 제3호서식) 1부</u></p> <p>② 신청서 접수는 <u>인터넷으로</u> 하고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인터넷으로 첨부서류 등을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팩스접수 또는</u> 실태조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신청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주된 사무소의 -----</u> ----- --.</p> <p>1.~3. (삭제)</p> <p>② ----- <u>사업공고에 따</u> <u>라 인터넷으로 -----</u> -----.</p> <p>③ ----- <u>팩스 또는 우편</u> <u>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미비한 자료는 -----</u></p>

문 신설

- 라. 온라인을 통한 업무에 따른 문구 변경(제6조, 제11조, 제15조)
 -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접수 방법 명기 및 수출지원기관에 업체의 지원 요청사항 전달·설명 방법을 전자적 방법도 가능토록 개정
- 마. 기타 지정 대상에 대한 의미의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리 등(제3조)
 - 의미를 명료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오해소지가 있는 문구의 수정

3. 의견제출

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해외시장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(전화 : 042-481-4461, Fax : 042-472-3293)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- 330호

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6일

중소기업청장

「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신용정보 조회 관련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기 폐지된 중앙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우선 선정에 대한 의미의 명료화 등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용정보 조회 관련 불필요 문구 삭제(제7조)

- 우리청은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실시에 관한 문구는 삭제

나. 기 폐지된 중앙센터 관련 문구 삭제(제15조 제3항, 제18조 제3항·4항)

- 중앙센터에게 보고하거나 중앙센터가 보고하는 조항 삭제

다. 우선선정에 대한 규정 명료화(제2조 2호, 제4조 5호)

- 우선 선정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선정조건 명료화를 위한 조